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경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1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송경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
김영철, 김재진, 김태수,
남궁역, 신복자, 유정인,
이은림, 이종환, 이효원,
이희원, 장태용, 최민규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서비스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의 위험을 수반하며, 민간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 서비스가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전자우편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성은 낮아 보임.
- 이에 따라, 조례상의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함(현행 제9조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9조(전자우편 서비스 제공) ①</u> <u>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</u> <u>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</u> <u>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</u> <u>공한다.</u> <u>② 시장은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</u> <u>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를 소</u> <u>속 공무원 및 시민에게 제공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③ 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</u> <u>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</u> <u>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</u> <u>고, 시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</u> <u>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</u> <u>를 가진다.</u>	<삭 제>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